

##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(구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2조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제3조 (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지정)</p> <p>①~③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<u>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 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일어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~ 제20조 &lt;기재 생략&gt;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조 ~ 제2조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제3조 (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지정)</p> <p>①~③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<u>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~ 제20조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- 약관변경 권고반영</p>